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21. 4.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법무부 본부 : 36건)

1.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소송에서 당사자인 국가가 1심 패소 후에 항소·상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1
2.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감독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인사보직 등 인사상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1
3. 무죄가 되기까지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심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무죄판결에 대한 정부의 소송비용 지급액은 1건당 약 210만원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4. 법률홈닥터사업의 법률구조공단으로의 이관 과정에서 법률홈닥터 변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협의하고 법률홈닥터사업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전자문서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관하여 각 기관 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 2
6.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증거영상 복사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인하할 것 2
7. 「국가보안법」상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이 수사관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금의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허위 지급된 상금에 대하여는 철저히 환수하도록 할 것 3
8.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의미를 반영하여 초과 지급된 가지급액의 자진 반환 미이행자들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환수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
9. 공익법인의 운영 및 감사, 지원내용에 대하여 공익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시민공익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도록 노력할 것 3
10.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 4

11. 난민 면접과정에서 영상물 및 면접조서의 복사를 허용하고, '난민인정 심사·체류지침'의 공개와 함께 그 내용을 정비하는 등 난민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12. 다른 법률과의 연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 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 5
13.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상근 진술조력인을 증원하고 진술조력인 수당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5
14.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및 보호업무의 주체를 항공사운영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하고 송환대기실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15.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처벌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것 7
16.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유관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 및 다양한 수사 기법 연구 등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17. 양육비 이행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18.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9
19. 출석조사 제한, 교정시설 입출시간 및 실제 조사시간 기록관리 등 인권 수사 제도개선 TF에서 발표된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개선방안이 실제 수사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20.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검사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법상 적격심사 후 퇴직명령제도 및 변호사 등록 제한 등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21. 고소한 지 3개월이 되면 후속조치 및 그 사유를 고소인에게 통보하고 인지 수사의 경우에도 피의자 조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거나 항고 또는 재정신청에 준하는 절차를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10

22. 현재 대검찰청 훈령에 두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법률 및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23.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 배당 및 재배당 과정에서 전자배당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11
24. 외부 전문가 임용 시 전임자가 사직을 한 다음 바로 충원이 안되어 중요한 직위가 상당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외부 전문가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어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외부 전문가 임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1
25. 검사 임용이나 재임용 등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인사위원회나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일반 국민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26. 수사기밀 유출, 피의사실 공표 등이 우려되므로 검찰개혁 과정에서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27.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요건 확대, 본인 사건 취급 행위 요건 강화, 법조브로커 금지 등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노력할 것 12
28. 교정시설 내의 정신질환자 급증, 의료기기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중 교정본부 관련 인권침해 접수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교정본부 스스로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30. 교정시설 노후화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5
31. 일대일 전자감독 및 야간시간대에도 공백이 없는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등 재범우려가 있는 출소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수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 15

- 32. 범죄예방 및 재범을 낮추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보호관찰 인력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호관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17
- 3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관이나 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17
- 34. 민간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17
- 35.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49명 중 재범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18
- 36.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감호위탁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18

(대검찰청 : 20건)

- 1. 헌법 및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부합하는 영장 제도를 운영할 것 19
- 2. 구두변론 폐지 및 전산기록 방안 등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개혁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 19
- 3. 전국 검찰 조사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9
- 4.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경우 감찰·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20
- 5. 최근 5년간 심야수사 건수가 평균 1,000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심야수사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
- 6. 특수수사 사건에서 사건관계인을 지나치게 많이 소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
- 7. 현재 비공개로 되어있는 행정규칙들을 다시 검토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공개할 것 20
- 8. 기관장 명의의 정례적 무기명 실태조사, 적발 시 신속한 조사 진행, 가해자 즉시 업무배제, 엄정한 징계, 인사고과 반영,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절차와 지침을 마련할 것 21
- 9. 발달장애인사건조사지침의 적용범위를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의견조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 21
- 10.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할 것 22

11. 검찰권의 행사가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
12. 검찰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검찰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 22
13. 경찰은 현재 '조사 당일 작성된 본인 진술서류'(피의자신문조서 포함)에 대하여 검토 후 조사 당일 조치가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검찰 내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시행방안을 검토할 것 23
14. '경찰 송치의견서' 공개 제도를 고소·고발 사건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15.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항고기각 통지 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뿐만 아니라 이유도 함께 통지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
16. 수사기록 열람·등사 시 통일적인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것 24
17. 최근 5년간 검찰 전체 조사건수 대비 영상녹화 실시 비율이 14.2%에 불과하므로 영상녹화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4
18. 검찰에서는 영상녹화 실시 기준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
19. 라임 사건·옵티머스 사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25
20. MBI 사기와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 전국에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26

(다.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 15건)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수수색영장을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라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전담검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26

2.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소환조사 등 검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의 소환조사 시 부서장 보고, 인권교육 확대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26
3.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조직 폭력범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7
4.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지역 인터넷 언론사의 횡포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27
5.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할 것 27
6.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라임 사건에서 비정상적인 수사 및 법조비리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할 것 28
7.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혁진 전 대표가 자진귀국 후 조사받도록 조속히 연락을 취해볼 것 30
8.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 29
9.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처럼 변호인들이 증거를 받지 못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29
10.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 29
11. (서울고등검찰청)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과 관련하여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 30
12.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KBS 시사기획 창 의 입법로비 사건 보도에 관해 검찰 내지 조사를 진행할 것 30
13.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하나고 편입 조작 의혹 수사를 빨리 진행할 것 30
1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패스트트랙처럼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0

15.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원전납품 변압기 관련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기소를 결정하였는데 경기도가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을 다시 확인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할 것 30

(라.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 7건)

1. (대전지방검찰청) 전국 평균 대비 현저하게 낮은 자유형 미집행자 처리율과 급증하고 있는 형사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30
2.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년범 선도사업인 ‘마음톡톡 음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3.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직권재심절차와 관련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을 관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안내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31
4. (전주지방검찰청)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사건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31
5. (대전지방검찰청) 중대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되지 않아야 하므로, 약식명령 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법원의 정식재판 과정에서 약식명령 청구의 부당함이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32
6. (제주지방검찰청) 최근 죄수와 죄수 상호간 돈거래 등을 연결해준 사건에 관하여 고발장에 현직 검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조사할 것 32
7. (광주지방검찰청)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유인을 단순히 품앗이로 보아 불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2

(마.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 15건)

1. (부산지방검찰청)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불기소처분 기록 열람 및 등사 공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2

2.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검의 항고율과 구속기간 연장률이 다른 청에 비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3
3.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건기록 복사 또는 판결문 발급 단계에서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
4. (공통) 주임수사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3
5.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검사의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4
6.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의 조서 증거능력을 변경하는 입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사 및 수사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비를 잘 할 것 34
7. (대구지방검찰청) 최숙현 선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35
8.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하여 유사한 성 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할 것 35
9. (울산지방검찰청)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36
10. (창원지방검찰청) 테러단체 관계자 구속기소와 관련하여,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을 일선 청에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6
11. (울산지방검찰청)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데 이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수사나 추가조사 할 것 36
12. (부산지방검찰청)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및 엘시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36
13. (부산지방검찰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앞으로 드론 등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36
14. (창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사건 불기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할 것 36
15. (공통)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방해행위는 엄단하되,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완화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할 것 37

(바. 대한법률구조공단 : 4건)

1. (대한법률구조공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국민을 위한 차질 없는 법률구조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공단 명의 소송대리 제도 도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39
2.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년 대규모 내부 인사이동과 수시적 전보, 공익 법무관 복무 만료 등으로 인하여 소송위임장(사임계, 선임계) 등을 변경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9
3.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하여 법률구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9
4.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 민원인에 막대한 사건 등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0

1.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법무부)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소송에서 당사자인 국가가 1심 패소 후에 항소·상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고등검찰청에 상소심의위원회 설치,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을 시행하는 등 국가소송에서 적절한 상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또한 '20. 12. 국가송무체계 개편에 따라 확대된 송무권한을 바탕으로 관행적 상소 자제 및 피해 신속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약촌오거리사건'('21. 2.), '삼례슈퍼사건'('21. 2.) 등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음
법무부 본 부	2.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감독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인사보직 등 인사상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시 인권감독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였음 ○ 향후 인사에서도 인권보호에 충실한 검사를 적극 발탁할 계획임
법무부 본 부	3. 무죄가 되기까지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심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무죄판결에 대한 정부의 소송비용 지급액은 1건당 약 210만원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죄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보상액”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하고 (법 제194조의3 제1항), 그 보상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할 것	<p>되어 있음(법 제194조의4)</p> <p>○ 법무부는 현행 규정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바, 비용 상향을 위해서 법 개정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음</p> <p>※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p>
법무부 본 부	4. 법률홈닥터사업의 법률구조공단으로의 이관 과정에서 법률홈닥터 변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협의하고 법률홈닥터사업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법률홈닥터 사업의 법률구조공단 이관은 공단과 법률홈닥터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이관 방향과 방식·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관 과정에서 법률홈닥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음</p> <p>○ 또한 이관 시에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라는 법률홈닥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임</p>
법무부 본 부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전자문서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관하여 각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	<p>○ '21. 1. 29. 국회에 제출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0조에서 전자문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음</p> <p>- 원칙적으로 유죄선고 사건은 형의 시효 완성 시까지, 무죄·불기소 등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 시까지 보관 후 전자문서 폐기토록 규정</p>
법무부 본 부	6. 「사건기록 열람 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증거영상 복사비용을	○ 특수매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대법원규칙)으로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2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실비 수준으로 인하할 것	3. 15.(월) 개정·시행
법무부 본 부	7. 「국가보안법」상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이 수사관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금의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허위 지급된 상금에 대하여는 철저히 환수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1명에게 지급되었음(경찰관) - '21.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내역은 없음 ○ '20.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이 수사관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허위 신청 등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법무부 본 부	8.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의미를 반영하여 초과 지급된 가지금액의 자진 반환 미이행자들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환수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조정권고는 연체이자의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관리법상 채권관리의 주체인 국가정보원의 결정이 필요함 ○ 다만, 법무부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음
법무부 본 부	9. 공익법인의 운영 및 감사, 지원내용에 대하여 공익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3. 법제처 심사 후 국회 발의 예정('21. 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도록 노력할 것</p>	
법무부 본부	<p>10.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p>	<p>○ 연내 국회 제출 및 통과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사회 각계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확정 후 국회 제출 예정 ※ '21. 3. 현재 법제처 심사 중
법무부 본부	<p>11. 난민 면접과정에서 영상물 및 면접조서의 복사를 허용하고, '난민 인정 심사 체류 지침'의 공개와 함께 그 내용을 정비하는 등 난민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p>○ 난민 면접 영상물 및 면접조서 복사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면접조서는 난민법 제16조에 따라 기존부터 복사를 허용하고 있었으며, 면접과정을 담은 영상물은 2019년부터 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면접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난민 신청자와 그 가족의 박해상황 악화 및 민간 통역인의 개인정보 침해 또한 우려되어 면접 영상물의 복사제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음 <p>○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공개·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난민지침은 공개 시 체류 연장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고,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p> <p>- 다만,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현행 지침 중 공개 가능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지침 내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p>
법무부 본 부	<p>12. 다른 법률과의 연계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p>	<p>○ 법무부는 특사경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일반 사경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접근성 및 전문성, 직무범위 내 범죄와 타 법률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p> <p>- 향후에도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법안 발의, 관계부처 건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p>
법무부 본 부	<p>13.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상근 진술조력인을 증원하고 진술조력인 수당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p>	<p>○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21. 3. 인천 지역)하였고, '22년 예산편성 시 진술조력인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당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음</p>
법무부 본 부	<p>14.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비용 부담 및 보호업무의 주체를 항공사운영 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하고 송환대기실</p>	<p>○ '20. 12. 21. 박영순 의원이 송환 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p> <p>○ 동 개정안에 대한 국토위 위원장 주재 국회 간담회 참석('21. 1. 29.)</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참석자 : 진선미 위원장, 박영순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 법무부, 국토부</p> <p>○ 수차례 일선 기관(8개 공항만 기관장 회의) 및 내부 의견수렴</p> <p>○ 법무부 검토의견 마련 및 국회 제출 ('21. 3.)</p> <p>- (검토의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되, 운수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수업자가 비용부담</p> <p>* '송환대기실'과 '출국대기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강제구금 시설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출국대기실이라는 용어가 좀 더 바람직함</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부 검토의견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되, 출대기실 관리 비용은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국가 - 운수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운수업자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입국불허 외국인 등에 대한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운수업자가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수송책임) ●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출국대기실 입실근거, 장기대기자·노약자 등을 위한 별도 시설 마련, 송환지연 방지를 위한 송환기일 지정권, 송환대기실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력 행사 권한 등 근거 규정 마련 필요 </div> <p>○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출국대기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15.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처벌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는 2018. 10. 15. 허위조작 정보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 2020. 1. 30.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응 지시 등을 통해 대검에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고, 검찰은 '20. 12. 31. 기준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유포 사범을 38명 기소(5명 구속)하는 등 각종 허위 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중임 ○ 법무부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등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구제절차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음
법무부 본부	16.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유관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 및 다양한 수사기법 연구 등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는 대규모 밀수입 범죄·국제 마약조직 추적 위주 수사 진행,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수사관 교차 파견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청소년 등에 대한 마약류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소유예 처분 전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실시로 마약류사범 재범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밀수입·매매 등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7. 양육비 이행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문제 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 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1. 12.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1. 7. 13.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출국금지 대상자에 양육비채무 불이행자를 추가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권인숙, 양금희 의원안)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 ○ '21. 1. 30.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미이행으로 출국이 금지 중인 사람에게 시행령 제17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u>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u> ○ '21. 3. 9. 법무부 <u>수정의견</u>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에게 <u>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u> ○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시행일('21. 7. 13.)에 맞추어 시행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18. 법률구조공단의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7.부터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정신청이 가능해졌고, '20. 11.부터 LH와 한국부동산원에 각 6개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작년에 새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단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확대설치 등 효과적 운용 방안 검토 추진 예정
법무부 본부	19. 출석조사 제한, 교정 시설 입출시간 및 실제 조사시간 기록 관리 등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에서 발표된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개선 방안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개선 방안이 실제 수사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법무부 본부	20.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검사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법상 적격심사 후 퇴직명령제도 및 변호사 등록 제한 등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형사범죄를 구성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 향후 검사적격심사 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도 적극 심의할 예정임 ○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도입될 경우 현행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외 규칙 위반에 따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21. 고소한 지 3개월이 되면 후속조치 및 그 사유를 고소인에게 통보하고 인지수사의 경우에도 피의자 조사 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거나 항고 또는 재정신청에 준하는 절차를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p>퇴직명령제도 등이 구체화되면 그 요건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의하여,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고소·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사건 신속 처리 등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항고·재정신청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법무부 본부	22. 현재 대검찰청 훈령에 두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법률 및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에서는 현재 검사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전문수사자문단·부장회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법무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시행의 공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화 방안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23.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 배당 및 재배당 과정에서 전자배당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배당지침」(대검예규)에 따라 전담·전문성, 지휘·관련성, 합리·형평성, 시의·상당성 등을 기준으로 배당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법무부 본부	24. 외부전문가 임용 시 전임자 사직 후 바로 총원이 안되어 중요한 직위가 상당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외부전문가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어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전문가 임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검찰화 이후 임용된 외부전문가의 잦은 이직과 단기의 재직기간, 이후 후임자 총원 시까지의 업무공백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법무부 본부	25. 검사 임용이나 재임용 등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인사위원회나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일반 국민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법무부 본부	26. 수사기밀 유출, 피의 사실 공표 등이 우려되므로 검찰개혁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시행중이고, 각급 청별로 수사담당자가 아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에서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전문공보관이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p> <p>○ 법무부는 수사기밀 유출·피의사실 공표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음</p>
법무부 본 부	27.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요건 확대, 본인 사건 취급 행위 요건 강화, 법조 브로커 금지 등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노력할 것	<p>○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11. ~ '21. 1.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21. 2.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완료 - '21. 3.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21년 상반기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 예정
법무부 본 부	28. 교정시설 내의 정신질환자 급증, 의료기기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근무여건(보수 등) 개선 및 고용형태의 다각화를 통해 정신과 전문의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정신과 전문의 초빙진료 및 원격 화상진료를 확대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을 도모하였음 <p>※ 현재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는 서울동부(구), 의정부(교), 진주(교) 등에 4명 배치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시달('20. 12.) <p>○ 의료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장비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장비 도입으로 수용자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디지털 방사선 영상진단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초음파 진단기 등 구입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장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연한(10년)을 초과한 모든 의료장비 교체 예정 ※ 약품포장기, 치과유니트 체어, 고압증기 멸균소독기, 심전도기, 자동혈압기 등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교도소 혈액투석실 확장 예정 • 코로나19 백신접종 대비 의약품 보관냉장고 구입 예정 <p>○ 감염병관리과 신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방역관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하여 교정본부 내 감염병관리과 신설 추진 <p>○ 수용자 1차 진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력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인력 확보 및 공중보건과의사 증원 추진 ※ 공중보건과의사는 2019년 71명에서 2020년 91명으로 증원 - 간호사 중심의 24시간 응급 의료체계 구축 추진 -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47개 교정기관에서 2021년 상반기 53개 전국 교정기관 구축 완료 예정 - 의무관 순회진료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의료센터 운영(서울동부구치소) - 재택 의무관이 영상관찰을 통해 직접 환자 상태 확인 ○ 예방의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건강검진 - 간암, 대장암표지자 검사 등을 추가하여 2020년 32개 항목 검사 ○ 혈액투석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남부(교), 대구(교), 대전(교), 광주(교), 서울동부(구) 등 5개 교정기관에서 운영 ○ 치료집중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 폐결핵, 한센병 등 중증질환자 집중관리 - 치료중점기관 : 진주교도소(정신질환, 폐결핵), 순천교도소(한센병)
법무부 본부	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중 교정보부 관련 인권침해 접수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교정보부 스스로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장비 종류 및 사용방법 개선, 조사징벌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쾌적한 거실 환경 조성, 냉·난방, 세탁, 급식 등 일상생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설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음 - '20년도 수용자 인권위 진정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 : 54,246명 • 진정제기건수 : 4,124건 • 진정접수건수 : 1,605건 • 권고건수 : 21건(진정 제기 대비 0.5%) ※ 1인이 동일사건 중복 진정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경우, 진정 제기건수(다수건), 진정 접수건(1건)으로 현황 차이 발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교정 직원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에게 인권침해사례를 공유하여 업무 수행 중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고, 현장 직원 인권교육, 인권 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음
법무부 본 부	30. 교정시설 노후화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용동 증·개축을 통한 수용동 확대를 위해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에는 청주교도소 등 3개 기관 증·개축 및 대구교도소 이전 등을 통해 수용 공간을 확보하겠음 ○ 중장기적으로 노후 교정시설 이전 및 재건축과 신축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 또한, 물리적인 수용공간 확대 외에도 가석방 활성화 및 교정기관 간 조절이송 등을 통해 수용밀도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법무부 본 부	31. 일대일 전자감독 및 야간시간대에도 공백이 없는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는 출소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 수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하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및 기재부 협의를 통해 '21년 소요정원으로 1:1 등 전자감독 전담인력 101명을 인정받아 '21년 상반기 배치 중에 있으며, 향후 전자감독 전담직원 1인당 대상자 수를 OECD 수준인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력을 확충 하도록 하겠음 ○ 재범우려가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p>	<p>출소 전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20.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를 사전 선별하여 출소 전 부착명령 청구 요청, 적정 준수사항 부과 신청, 1:1 전담보호관찰관 사전 지정 등 적극 대응 ○ 최고 수준의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인력 사정에 맞추어 1:1 전자감독을 지속 확대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 및 성행 교정을 위해 전문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음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1. 6. 9. 시행)을 통해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력을 확보하고, 경찰과의 정보공유 및 긴급상황에 공동 대응, 지자체 CCTV 활용 확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음 ○ 「보호수용법」('20. 9. 김병욱, 양금희 의원, '21. 1. 김철민 의원)과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21. 1. 김남국 의원) 등 총 4건이 발의되었으며,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범죄자의 인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보장 등 형사사법체계 원칙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음
법무부 본부	32. 범죄예방 및 재범을 낮추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보호관찰 인력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호관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및 기재부 협의를 통해 '21년 소요정원으로 성인보호관찰 34명, 조사인력 53명 등 87명을 인정받아 '21년 상반기 배치 중에 있음 ○ 향후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 수를 OECD 국가의 1.5배인 41명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음
법무부 본부	3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관이나 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범죄예방 정책 전문성 강화, 법무부 내외 원활한 정책연계, 소속기관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본부' 승격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본부' 승격의 전단계인 범죄예방정책국의 '실(室)' 승격을 추진하겠음
법무부 본부	34. 민간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법인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정책 추진사항 논의 등 상호간 소통을 강화하겠음 - 민간법인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 - 민간법인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 협업 및 교류를 확대하여 공단의 취업알선, 직업훈련, 주거지원, 심리상담프로그램 등을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35.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49명 중 재범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의심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적극 활용 및 성도착증 진단 시 법원에 적극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였음 - '20. 11. 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대검찰청이 협의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적극 청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 10.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법무부 본 부	36.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감호 위탁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법상 6호의 '감호위탁' 시설은 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을 중심으로 법원에서 6호 시설로 지정·이용하고 있음 <li style="padding-left: 20px;">※ '21. 3. 기준 아동보호치료시설(8개) 등 총 13개 지정·운영 ○ 향후 법원과 협의를 통해 위탁시설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를 감호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감호위탁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음

2.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포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 헌법 및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부합하는 영장제도를 운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구속수사비율은 2015년 1.34%(33,287명)인데 반해, 2020년에는 1.05%(23,579명)으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구속수사비율과 인원이 줄어들고 있음 ○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부정 등 구속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일선청을 지휘하겠음
	2. 구두변론 폐지 및 전산 기록 방안 등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개혁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11.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형사사건 변호활동내역 입력을 전산화하고(KICS 변호활동관리부에 입력) 담당자와 기관장 상호간 입력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2021. 2부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KICS 변호활동 관리부에 변호활동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대상사건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활동 보장을 위하여 검찰수사 단계의 구두변론 절차 구체화·투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3. 전국 검찰 조사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6.부터 대검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중심 수사TF’를 두고 인권 중심의 출석요구·조사방안 등 실무관행을 점검, 개선하고 있음 ○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일선청의 인권보호 실태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점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감독관이 설치된 전국 23개청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절차 관련 주요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시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감독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청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 중심의 수사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4.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경우 감찰·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 규칙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5. 최근 5년간 심야수사 건수가 평균 1,000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심야수사와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은 2019. 10.부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심야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일선청에 시행 중임 ○ 일선의 심야조사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더욱 충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6. 특수수사 사건에서 사건관계인을 지나치게 많이 소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2020. 10.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복조사에 대한 사전보고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하였음 ○ 향후에도 소환조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수수사 사건에서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7.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행정규칙들을	○ 2020. 6.~10. 대검의 비공개 훈령·예규 79개 중 31개를 공개 전환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다시 검토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공개할 것	○ 앞으로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음
	8. 기관장 명의의 정례적 무기명 실태조사, 적발 시 신속한 조사 진행, 가해자 즉시 업무배제, 엄정한 징계, 인사고과 반영,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절차와 지침을 마련할 것	○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대검 예규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위 지침에서 성희롱 등 사건 관련 실태 조사, 고충 사건 접수 시 20일 이내에 조사 완료 및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조정·공간 분리 조치,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위자 징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피해자 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겠음
	9. 발달장애인사건조사 지침의 적용범위를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의견조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은 피의자 및 피해자 모두 발달장애인인 사건뿐만 아니라 피의자만 발달장애인인 사건과 피해자만 발달장애인인 사건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지침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임 ○ 위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관련 전문가에게 발달장애인의 정신·심리 상태 및 진술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함(동 지침 제10조 제1항) ○ 또한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위원으로 위촉하여 발달장애인의 심리상태, 진술태도 등 전반에 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음(동 지침 제10조 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조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p>10.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조사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p>11. 검찰권의 행사가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2019. 7. 전문수사 자문단, 대검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부장회의 제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도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p>12. 검찰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검찰 신뢰 회복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바탕으로 2019. 10. 변론권 강화 및 투명성 제고, 2020. 10. 압수수색 관행 및 출석조사 관행 개선, 2020. 11. 전관예우 근절방안 시행 등 지속적으로 자체개혁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경찰은 현재 ‘조사 당일 작성된 본인 진술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포함)에 대하여 검토 후 조사 당일 조치가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검찰 내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시행방안을 검토할 것</p> <p>14. ‘경찰 송치의견서’ 공개 제도를 고소·고발 사건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추진하여 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2018.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2019. 7.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대검 부장 회의, 지방검찰청 부장회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찰권에 대한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사 당일 작성된 본인 진술 서류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송치의견서가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는 다른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열람·복사가 가능함 ○ 수사보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송치의견서 공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항고기각 통지 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뿐만 아니라 이유도 함께 통지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청구가 있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 또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7일 이내에 항고인·재항고인에게 ‘이유’가 포함된 ‘항고·재항고사건 결정통지’를 하고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4항) ○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p>16. 수사기록 열람·등사 시 통일적인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2008. 6. ‘민원서류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시달’ 지시의 기준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고, 2015. 12.에도 사건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 청에 ‘개인정보 마스킹 시스템’을 완비하여 위 시스템을 이용한 통일적인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임 ○ 향후에도 통일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p>17. 최근 5년간 검찰 전체 조사건수 대비 영상녹화 실시 비율이 14.2%에 불과하므로 영상녹화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의 영상녹화조사 실적이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①필요적 영상녹화 대상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을 개정하였고, ②고정식·폐쇄형 영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녹화전용조사실 방식의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출장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최신 이동형 영상녹화장비를 도입하여 일선에 배포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지속적인 일선청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AI 기반의 음성인식기술 활용 조서작성’ 등 편의성 증진을 통한 영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차세대 KICS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영상녹화조사의 양적·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p>18. 검찰에서는 영상녹화 실시 기준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검에서는 영상녹화 실시 기준이 규정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제1131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동 지침 제5조 제1항에는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21. 1. 1.자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피의자,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향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p>19. 라임사건·옵티머스 사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유재수 검찰무마 사건 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일선을 지휘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p> <p>20. MBI 사기와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 전국에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p>	<p>○ MBI 관련 사건의 기존 판결문 분석 및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선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p> <p>○ 향후에도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음</p>
<p>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p>	<p>1. 압수수색영장을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전담검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중앙지검, 동부지검)</p> <p>2.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p>	<p>○ 서울중앙지검은 2020. 10. 16.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청구 시 대상자 및 가족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영장청구에 준하여 결재선을 기존 차장검사에서 검사장 결재로 상향 (중앙지검)</p> <p>○ 2021. 1.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으로 수사지휘가 폐지되어 경찰 영장신청에 대한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업무 강화 필요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수사지휘전담검사 3명을 영장전담검사로 개편하여 운용 중 (중앙지검)</p> <p>○ 서울동부지검은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청구 등의 경우 인권감독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영장전담검사 제도를 두어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부지검)</p> <p>○ 2020. 10. 대검찰청의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시행</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의 소환조사 시 부서장 보고, 인권교육 확대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중앙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을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이상) 동일 사건으로 조사할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 - 동일인을 10회(참고인은 5회) 이상 반복 조사한 사례를 인권감독관이 6개월마다 점검하여 기관장과 대검에 보고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 2020년 하반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 시행
	<p>3.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남부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폭력범죄가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단속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음 ○ 다만 경찰이 단속한 조직폭력 사건에 대해 신병 관련 수사지휘,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 피해를 신고한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 선처 등으로 피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p>4. 지역 인터넷 언론사의 횡포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남부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언론사의 횡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나 진정, 고소 및 고발이 있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여 대처 중임 ○ 향후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p>5.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티머스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철저히 수사할 것 (중앙지검, 남부지검)</p>	<p>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통해 펀드 운용사 대표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펀드 판매사를 비롯하여 펀드 자금이 유입된 상장회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음 (중앙지검) ○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58명을 기소(32명 구속 기소)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였음 (남부지검) ○ 기소된 사건의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할 계획임 (남부지검)
	<p>6. 라임 사건에서 비정상적인 수사 및 법조 비리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할 것 (중앙지검, 남부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58명을 기소(32명 구속 기소)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였음 (남부지검) ○ 검사 비위 의혹 관련하여 현직 검사 1명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징계 관련 조치를 하였음 (남부지검) ○ 기소된 사건의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계획임 (남부지검) ○ 아울러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각별히 유념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음 (남부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혁진 전 대표가 자진귀국 후 조사받도록 조속히 연락을 취해볼 것 (중앙지검, 수원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한 상황이며, 이혁진 대표의 자진 귀국 및 조사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 (중앙지검) ○ 서울중앙지검의 본건 관련 수사 경과에 따라 사건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중앙지검) ○ 이혁진의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필하였고, 소환을 위한 연락, 출석요구서 발송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수원지검)
	<p>8.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 (중앙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상황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필요한 수사 진행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음
	<p>9.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처럼 변호인들이 증거를 받지 못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중앙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 수사 중’ 등 형사소송법상(제266조의3제2항) 기록 열람·등사 제한사유가 있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일부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였음 ○ 검찰은 신속한 재판진행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2020. 8. 기록 일체를 제공하였음 ○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p>10.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 (중앙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장 접수 후 관련자 조사, 자료 검토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과 관련하여 허위 수사 보고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징계조치를 검토할 것 (서울고검)	○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은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임 ○ 특별검사가 기소하고 공소유지중인 사안이므로 현 단계에서 검찰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12. KBS 시사기획 창 의 입법로비 사건 보도에 관해 검찰 내지 조사를 진행할 것(중앙지검)	○ 해당 사건은 2014년에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임 ○ 언론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당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임
	13. 하나고 편입 조작 의혹 수사를 빨리 진행할 것 (중앙지검)	○ 현재 수사 진행 중이므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4.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패스트트랙처럼 공무원의 공무집행 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서울고검)	○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백한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15. 원전납품 변압기 관련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는데 경기도가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을 다시 확인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할 것 (중앙지검)	○ 경기도의 재항고는 2021. 1. 11. 기각되어 해당 사건 관련 형사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음
대전고검 대전지검	1. 전국 평균 대비 현저하게 낮은 자유형 미	○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유형미집행자 직접 검거를 자제(이후 대검 원칙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집행자 처리율과 급증하고 있는 형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대전지검)	직접 검거 금지 지시)하여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향후 다각적인 사실조회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거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 송치 직후 적절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사건 배당 직후부터 처분 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신속히 처리할 예정 ※ 미제 5,136건, 장기미제 520건('20. 12. 31.) → 미제 3,135건, 장기미제 437건('21. 1. 31.)으로 대폭 감소
	2. 광주지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년범 선도 사업인 '마음톡톡 음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광주지검)	○ 대상 청소년들을 상대로 재범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국 확대 시행 건의 등을 검토하겠음
	3.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직권재심절차와 관련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을 관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안내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광주지검)	○ 재심 청구 전 당사자의 재심 청구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재심 개시 결정 이후 당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하여 통합사건 검색, 소재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4.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투자 자문업사건 등 다수의	○ 다중피해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서민다중에 피해를 주는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전주지검)</p>	<p>'21. 3.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수익환수 강화, 피해 재산에 대한 신속·적정한 환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p>
	<p>5. 중대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되지 않아야하므로, 약식명령 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법원의 정식 재판 과정에서 약식명령 청구의 부당함이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대전지검)</p>	<p>○ 사건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사건의 중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사건을 처분하도록 노력하겠음</p>
	<p>6. 최근 죄수와 죄수 상호간 돈거래 등을 연결해준 사건에 관하여 고발장에 현직 검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조사 할 것 (제주지검)</p>	<p>○ 현재 조사 진행 중이므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p>7.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유인을 단순히 품앗이로 보아 불처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광주지검)</p>	<p>○ 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p>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p>	<p>1.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불기소처분 기록 열람 및 등사 공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부산지검)</p>	<p>○ 2021. 1. 1. 시행된 개정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의 신청범위가 확대되었음</p> <p>○ 개정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신청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울산지검의 항고율과 구속기간 연장률이 다른 청에 비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울산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고율을 낮추기 위해 불기소 처분 전 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사건 총실 처리방안 시행 등 고소사건을 보다 내실 있게 처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사안이 복잡한 경우 부득이하게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자 노력하겠음
	3. 사건기록 복사 또는 판결문 발급 단계에서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대구고검, 부산고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기록 복사 및 판결문 발급 시 담당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비닉(秘匿)처리한 뒤 교부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유출 방지조치 시행 중 (대구고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인적사항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전 모든 문건에 대하여 인적사항 비공개 처리 여부를 철저히 검수하고 있음(부산고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기록, 증거 열람 과정에서 촬영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담수사관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음
	4. 주임수사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2. 대검 지시에 따라 주임수사관제 계속 실시 중(공통) ○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에도 검찰보완수사 필요 사건에 대해 주임수사관제 적극 확대·활용 예정 (대구고검) ○ 지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임수사관제도를 보다 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해 나갈 예정임(대구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검사실·수사관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 수사결정시스템에 등록하는 주임수사관제 실시를 검토 중임 (부산고검) ○ 주임검사뿐 아니라 부장검사도 주임수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송치사건 외에 영장신청 사건도 주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부산지검) ○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 수사결정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주임수사관제를 확대하여 수사관의 사명감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음 (울산지검) ○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검사실·수사관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등 주임수사관제도를 비롯한 수사관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검토 중임 (창원지검)
	5. 대구지검 검사의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구지검)	○ 지적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2021년 2월 검사 인사로 일부 인력 보강이 있었으므로 검사 1일 사건 부담량이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됨
	6. 검사의 조서 증거능력을 변경하는 입법이 통과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 개정 형사법령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대검 예규) 등을 검사 및 수사관에게 전파하였으며 전직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검사 및 수사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비를 잘 할 것 (대구고검, 부산고검)</p>	<p>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안내 하였음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지침 전파 및 직장교육 등을 통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대구고검) ○ 종래의 조서작성 관행을 타파하고 피조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여 조서 대신 수사보고서, 녹취서 등을 활용하는 ‘듣는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부산고검)
	<p>7. 최숙현 선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대구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후 신속히 수사 진행하여 감독 등 주모자 3명 전원을 구속 기소하고, 보조금 등을 편취한 경주시체육회 前고위임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유족을 포함하여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법정동행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 2021. 1. 1심 법원은 주모자인 팀닥터 안○○ 징역 8년, 감독 김○○ 징역 7년, 주장선수 장○○ 징역 4년 등 중형 선고
	<p>8.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하여 유사한 성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할 것 (부산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10.~12. 부산지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제도화, 직권고충상담 근거 신설 등 성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음 ○ 2021. 2. 검사 정기인사 직후 검사장 특별지시에 따라 부서별로 성비위사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울산지검)	○ 2020. 7.경 경찰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21. 1. 28. 각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였음
	10. 테러단체 관계자 구속 기소와 관련하여, 테러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을 일선 청에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창원지검)	○ 해당 사건을 비롯한 테러단체 사건 들의 수사 및 공판 내용을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서와 공유 하는 등 테러범죄 수사 경험이 보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11.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데 이를 점검하고 필요 하면 재수사나 추가 조사 할 것(울산지검)	○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으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해 점검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으나, 검토한 결과 처분이 부당 하거나 재수사해야 할 사정은 확인 되지 않았음
	12.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및 엘시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부산지검)	○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하여 2021. 1. 28. 불구속 구공판하였고, 엘시티 사건의 피의자 5명을 특경법위반(사기)죄로 2021. 1. 29. 불구속 구공판하였음
	1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앞으로 드론 등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수단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부산지검)	○ 과학수사기법, 디지털 증거의 확보 및 분석방법, 증거법 등을 연구하여 새로운 범행 수법에 대응하고, 2020. 4. 강화된 불법 촬영 음란물 사범 처리 기준에 따라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하겠음
	14. 마약사건 불기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 마약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 12. 강력부에 4개 수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해 관리 할 것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p>	<p>팀을 편성하여 전담을 세분화하였음 (대구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전력 없는 마약사범의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 및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치료보호·교육이수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다소 불기소율이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유통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라 마약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철저히 하는 한편 밀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처벌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부산지검) ○ 불기소율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초범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에 및 기소중지 처분 비율의 상승), 기소유에 및 기소중지 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등 마약사건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창원지검)
	<p>15.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방해 행위는 엄단하되,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완화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할 것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방해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되, 민생 사범에 대해서는 악화된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확대 시행토록 산하청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음 (대구고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마스크 대량유통조직사범 등 코로나19 방역 저해사범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가격리·집합금지 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범 40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에 신속·엄정 대처하고 있음(2021. 2. 2.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벌금 사범에 대해 벌금 납부연기·분납 요건 완화하는 등 다양한 선처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지청까지 확대 시행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구 지검)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방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민생 사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부산고검) ○ 2020. 3.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사범에 대하여 감경 구형, 벌금 분납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부산지검)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방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민생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에 적극 활용,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울산지검)

3.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산하기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한법률 구조공단	1.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국민을 위한 차질 없는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공단 명의 소송대리 제도 도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공단 명의 소송대리를 위한 법률구조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2020. 5. 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18. 12. 7. 금태섭 전 의원 대표발의 ○ 공단 명의 소송대리 도입을 통해 공단 소송구조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건 관리에 관한 행정 효율 개선 및 국민의 공단 이용상 편의를 증진하겠음 ○ 법률구조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대한법률 구조공단	2. 매년 대규모 내부 인사이동과 수시적 전보, 공익법무관 복무 만료 등으로 인하여 소송위임장(사임계, 선임계) 등을 변경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반복 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는 수임변호사 변경에 따른 소송위임장 변경제출에 대비하여 최초 사건 접수 시부터 의뢰인에게 인사이동에 따른 수임변호사 변경 가능성을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징구하는 등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금년 내에 공단 명의 소송대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구조법 개정을 통해 인사이동 시에도 의뢰인의 추가 협조 없이 담당 변호사를 변경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대한법률 구조공단	3.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9. 2. 신임 이사장 부임 후 공단의 직렬 간, 직제 간 갈등관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법률구조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p>해소를 우선적 해결과제로 두고, 각 직렬을 대표하는 노조를 만나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였으며, 공단 현안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단의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면서도 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노조와 원만한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한편, 노조는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직역의 직원이 동참하여 공유할 수 있는 공단 비전을 만들어 상생화합의 지속가능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편, 공단은 '20. 12. 「공단의 공익적 성격에 따른 임직원의 법률상 지위 및 책임」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는바,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집단행동, 파업 등의 허용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p>대한법률 구조공단</p>	<p>4. 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 민원인에 막대한 사건 등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21.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갑질 근절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질 근절 대응 체계 구축 - 갑질 피해신고 전담 채널 운영 - 갑질 예방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직원 개인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 실시 ○ 현재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원 고충에 대하여 신속한 상담과 공정한 심사절차를 확대하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의 직원업무고충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